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년 11월 26일 청탁금지법과
2019년 12월 31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 청탁금지법과 의원행동강령의 주요 개정 사항은
 - ▶ 공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 ▶ 지방의회 의장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는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서울특별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개정안의 취지를 살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